

제395회 국회
(임시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4월20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3)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0)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4)
4.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7)
5. 공소청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6)
6.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 입법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김기현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3)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2)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24)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2)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6)

상정된 안건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3) 1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0) 1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4) 1
4.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7) 1
5. 공소청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6) 1
6.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 입법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김기현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3) 2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2) 2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24) 2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42) 2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6) 2

(15시50분 개의)

○소위원장 박주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

의)(의안번호 2107833)

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30)

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4)

4.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7)

5. 공소청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6)

6.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 입법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김기현 의원 외 8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33)

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832)

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0224)

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042)

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2115286)

○소위원장 박주민 의사일정 제1항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제10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서 어제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의사진행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이에 이야기를 나누어서 최강욱 위원님께서 좀 발언을 해 주시는 것으로……

○최강욱 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어제 벌어진 사태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주요 직위의 공직자들의 시간을 허비하게 해 드린 것 같아서 우선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로부터 이번 법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들었고 어제 벌어진 상황에서 서로 간에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속기록이나 제가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설명한 사실을 국민의힘에서 잘 정리해서 또 브리핑까지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속기록상으로도 명백한 것처럼 저는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 저것, 그것이라는 식의 비하적인 표현을 할 생각도 없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말이 맥락과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내용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호를 자극할 수 있는 감정적인 발언은 앞으로도 상호 간 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더 말씀하실 것 없지요, 관련돼서?

○유상범 위원 지금 4조가 아직 논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법안을 설명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오늘 보니 민형배 의원이 탈당을 하셨네요. 민주당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거치신 모양입니다, 갑자기 탈당까지 다 하시고. 탈당을 하시고 나서, 아마 우리가 월요일 날 12시 반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어제도 10시까지 논의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토론 주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안전조정위로 회부하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시스템의 근본을 바꾸는 법안을 지금 우리가 토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고 이틀 만에 직회부를 한 상태이자 대검과 법무부의 검찰국에서는 그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밤새 준비해 가지고 이 자리에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도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월요일 하루 시간이 부족해서 이틀간에 걸쳐서 자료를 내고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를 희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대한변협에서도 그 법안의 문제점을 다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에 수많은, 개정된 법률이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흔들지에 대해서도 다 설명하고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데 국가적으로 국가 경영의 근본인 형사시스템을 변경하는 법률을 전부 개정하면서 갑자기 안전조정위에 회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동안 민주당의 가장 전사처럼 활동하던 민형배 의원이 무슨 사유였는지 모르게 탈당을 해서 갑자기 우리 법사위의 인원 정수 구성을 바꿨습니다. 11 대 6 대 1로 구성돼 있던 법사위 정수가 이제 민주당 10에 국민의힘 6 그리고 무소속 2가 되면서 정수 조정을 하는 형태로 바뀌어서 결국은 안전조정위에서 일방 통과를 시키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도하다고 표현하는 걸로 부족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법이 민주당의 법입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면 그냥 수로 밀어붙여 가지고 아무거나 입법할 수 있습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낼 때 단순히 이게 내 조직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제가 참 무력하고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이런 식으로 만

들어 내는 그 모습…… 나중엔, 통과되면 즐거우시겠지요, 통과되는 데 앞장서신 분들은. 그러나 그 법이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지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 보시면 마냥 즐겁지는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안전조정위로 회부하는 모양입니다. 정회를 요청드리고, 안전조정위 회부요청서가 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다 말아 먹으십시오.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부 위원 퇴장)

○**김용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떤 국민들을 위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국민들을 위하니까 권력을 분산시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인수위 측에서는 지금 국회의 입법권을 박탈하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헌법 파괴적인 발언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의가 돼 왔던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최강욱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의 심사 과정에서 느꼈듯이 지금 동일한 주제에 관해서 같은 논점의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비단 21대 국회의 지금 2022년 4월에 벌어지는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부터 죽 논의되어 왔던 역대 정부에서 언제나 큰 주제 중의 하나였고 정책적 과제 중의 하나였고 또 역대 국회에서 임기 때마다 논의되어 왔던 이 검찰 개혁에 관한, 검찰 정상화에 관한 사안이 논의될 때마다 늘 반복되는 현상이라는 점이 저를 매우 실망하게 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이 법안이 이렇게 시끄럽게 여러 가지 우려곡절을 겪으면서 심의되어야 하는 것인지, 왜 그토록 집요하게 이 법안의 원활한 심사를 방해하고 그것을 계속 지연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검찰왕국, 검찰권의 지상화 이런 것들을 공약한 현 당선자의 의중은 없는 것인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제대로 좀 성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검찰은 집단적으로 준동하고 검찰 출신 위원들이 법사위에서 입법 진행 과정에, 정상적인 의사 과정에 발목을 잡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늘 좌초시켜 오고 그 과정에

서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 왔던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의 불행, 이미 70년이 넘도록 그 문제점이 확인돼 있는 과도한 권한의 집중 이런 것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말끔히 해소되고 검찰조직과 구성원들이 제대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훌륭한 공직자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주민**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집단적으로 퇴장하신 가운데 안전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고요 속개하는 시간은 특별히 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7인)

김 용 민	박 주 민	유 상 범	이 수 진
전 주 혜	최 강 욱	최 기 상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 장 호
전 문 위 원	허 병 조
전 문 위 원	박 철 호
전 문 위 원	심 정 희